

제 1 장 목적 및 정의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투어콘서트(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www.tourconcert.co.kr>)를 통하여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투어란 여행자가 계약에 따라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가이드란 당사에 소속되어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자란 당사와 계약을 통해 투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바우처란 당사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된 문서를 말합니다.
5. 투어비용이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모임장소란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7. 모임시간이란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8. 부가서비스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 운송, 식사 등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장 기본 사항

제 3 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4 조 (계약당사자의 기본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가이드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 5 조 (투어서비스의 내용)

1.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투어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 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여행자간의 정해진 규정아래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 (2) 모임장소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 (3)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2. 여행자는 제 1 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가서비스는 본 약관에 정한 투어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는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여행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바우처와 여행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비록 바우처에 표시되었더라도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여행계약의 체결

제 7 조 (여행계약 체결)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여행계약이 체결됩니다.

- (1) 당사가 투어일정, 투어비용 등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제시한 청약의 유인에 따라 여행자가 투어를 신청하여 청약하면, 당사가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 시 미리 고지한 기한 내에 여행자에게 회신함으로써 승낙하는 경우
- (2)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사전에 투어일정, 투어비용 등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바우처를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3. 제 1 항 제 1 호에서 당사가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투어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여 여행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라도 당사가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고지한 기한 내에 이를 여행자에게 회신할 경우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는 여행자가 지급한 투어비용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제 8 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바우처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바우처 및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제 7 조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계약 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3)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4)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 (5) 천재지변 및 파업과 같은 갑작스러운 현지 사정에 의해 투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제 4장 투어비용

제 10조 (투어비용)

1. 여행자는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투어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투어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개인적으로 주문한 식음료, 일체의 팁 등)
- (2)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 (4) 가이드가 여행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여행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숙박, 운송, 식사 제공, 출입국 수속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여행자는 투어비용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제 11조 (투어비용의 환율)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에 투어비용을 지급하는 시점과 여행자가 당사에 가이드서비스를 받는 시점 사이의 외화환율이 증감으로 변동되더라도, 당사는 여행자가 당사에 투어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 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투어비용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투어 개시 이전 변경 분은 투어 이전에, 투어 중 변경 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가 여행자에게 각각 정산(환급)합니다.

3. 여행자는 투어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광 등 투어비용 및 부가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5장 투어 개시 전 계약의 해제

제 13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모임 장소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4조 (투어 개시 전 임의해제)

1. 여행자는 당사에 투어비용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여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투어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환불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예약 대행, 특가 행사 등의 이유로 환불이 불가함을 별도로 명시해 두었을 경우 취소·환불규정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3. 당사가 여행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여행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서비스 예약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본 조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 지출과 관련한 손해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1. 당사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투어 개시일로부터 2 일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제 1 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16 조 (투어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투어 개시일 이전에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계약 해제 시 당사의 여행요금 반환 의무)

당사는 제 14 조 내지 제 16 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지급 받은 투어비용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14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투어비용에서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6장 의무 및 책임

제 18 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가이드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여행자가 가이드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가이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가 당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설명 및 자료를 통하여 여행 일정, 투어비용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여행자는 안내된 기일까지 투어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따르지 않아 팀에서 낙오되거나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시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이드에게 투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여행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8. 여행 도중 여행자의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투어 진행에 있어 여행계약상 조건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투어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당사는 가이드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4.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7 장 투어 진행의 장애

제 20 조 (가이드의 지각)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모임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가이드의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제 21 조 (여행자의 지각)

1. 단체투어 진행 시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모임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어 개시 후 중간 합류는 원활한 단체투어 진행에 지장을 주므로 가이드는 인솔 중에 지각한 여행자와 개별 연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투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투어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단독투어 진행 시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 분이 넘도록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투어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임박하여 여행자가 시간을 재조정할 경우 해당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2 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투어의 중단)

가이드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투어비용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부분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당사는 위 정산의무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밖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장 투어 진행 중 여행계약의 해지

제 23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임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투어 개시 후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투어비용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가이드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어 개시 후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투어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 24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 18조 제 1항 및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25조 (계약 해지 시 당사의 투어비용 반환 의무)

1. 당사는 가이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투어비용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부분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투어비용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9장 기타 일반 의무

제 26조 (설명 의무)

당사는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27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당사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28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당사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